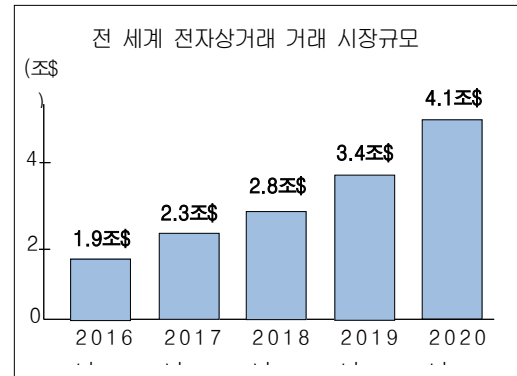


- (국제동향) 글로벌 전자상거래는 매년 급증세를 보이며, '17년 2.3조 달러*에서 '20년 약 4.1조 달러로 지속 확대될 전망

* 전 세계 수출액('17. 17조불)의 약 1/7 수준 <'18.1 美 eMarketer 보고서>

- 인터넷결제방법 발전, 전자상거래업체 확산 등에 따른 구매 편의성 및 가격 경쟁력*의 확대로 B2B 부문이 전자상거래 무역으로 전환되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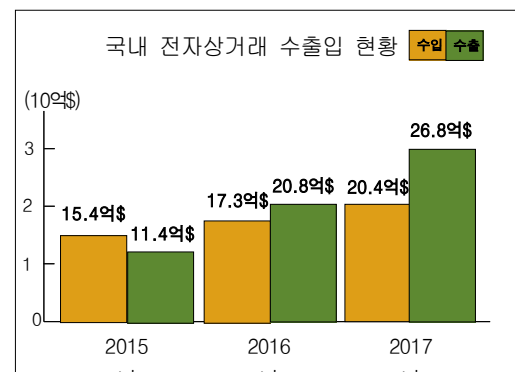
* ① 세금 면제, ② 법령상 수출입 요건 회피, ③ 유통과정 축소에 따른 판매가격 절감 등



(자료 : www.e-Marketer.com, 2018.1월)

- (국내동향)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무역은 47.2억불 규모로 매년 성장세에 있으며, 수출은 '16년부터 수입을 앞지르며 '17년 26.8억불을 기록

- 통계청 기준으로 전자상거래 수출은 전체 수출('17. 5,734억불)의 0.46%에 불과하며, 면세점의 온라인판매('17. 20억불)가 전체 전자상거래 수출의 80%를 차지



[자료 : 온라인 해외 구매(수입)·판매(수출)현황, 통계청]

- 전자상거래 수출증가율은 최근 4년간 연평균 63.2%로 일반수출 증가율(12%)보다 5배 이상 빠른 속도로 성장

- (시 사 점) 새로운 수출경로 및 높은 고용창출 잠재력*을 가진 전자상거래 수출이 확대되도록 기업·개인의 관심과 정부 지원이 필요

* 국내 통신판매업자 : 개인 35만명(전체 사업자의 6%), 법인 10만개(전체 법인의 12%)

< 수출 대상국 >

- (통계청) 면세점 온라인 해외판매를 포함한 '17년 전자상거래 수출 대상국은 금액기준으로 중국(2,049백만불), 미국(160백만불), 일본(122백만불), 아세안(95백만불) 순*

* 4위부터는 대륙별로 발표 : 아세안(95백만불), EU(27백만불), 중남미(9백만불), 중동(7백만불)

- (관세청) 면세점 온라인 해외판매를 제외한 '17년 전자상거래 수출 대상국은 222개국으로 수출국은 매년 확대 추세*이며, 연간 1백만불 이상 수출 대상국은 15개국**

* ('15) 167개국 → ('16) 205개국 → ('17) 222개국 / ** 중국, 일본, 미국, 싱가포르, 대만 등

*** 면세점 온라인 판매의 경우 해외구매자가 인터넷을 통해 구매는 하지만 물품수령을 국내 출국시 인도장에서 받는 방식이므로 관세청에서는 전자상거래 수출통계에서는 제외

- '17년 10만불 이상 수출 대상국은 43개국으로 전체의 19.4%이며, 10만불 미만 수출국이 179개국(전체의 81%)으로 대부분을 차지

< '17년 온라인 수출 금액별 국가 수 > (단위 : 천 달러, 개국)

구 분	10미만	10 ~100	100 ~1,000	1,000 ~10,000	10,000 이상	합 계
국가수	131	48	28	10	5	222

- '17년 수출금액별로는 중국(82백만불), 일본(70백만불), 미국(49백만불), 싱가포르(31백만불), 대만(18백만불) 순이며, 건수*로는 일본(2,247천건), 중국(1,700천건), 싱가포르(1,057천건) 순

* 온라인 수출 건수(%) : 일본(31.7) > 중국(24.0) > 싱가포르(14.9) > 미국(7.2) > 대만(3.1)

- 최근 3년간 수출금액이 급증한 국가는 대만(399.0%↑), 베트남(298.4%↑), 필리핀(215.0%↑), 일본*(188.0%↑), 인도네시아(122.3%↑) 순

* 일본, 대만의 경우 국내 대형 온라인쇼핑몰의 해당국 해외진출 전략 집중에 기인

- 최근 3년간 수출건수가 급증한 국가는 대만*(836.9%↑), 일본(23.2%p↑)이 크게 증가한 반면, 싱가포르(23.4%p↓), 중국(23.4%p↓)은 감소

* 대만 : '15년 금액 11위, 건수 15위 → '17년 수출액 5위, 건수 5위

< 주요 수출 품목 >

- (통계청) '17년 면세점(온라인판매)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수출품목은 화장품(1,978백만불), 의류(363백만불), 전자기기(66백만불), 생활용품(41백만불) 순

* 통계청 통계는 면세점 판매액이 포함되어 면세점 판매가 많은 화장품이 1위 차지

< '17년 통계청 온라인 해외직접판매 주요 품목 > (단위: 백만불, %)

순위	수출품목	수출금액	비율
1	화장품	1,978	75.8
2	의류	363	13.9
3	전자기기	66	2.5
4	생활용품	41	1.6
5	음반류	30	1.2
6	식료품	27	1.1
7	서적	19	0.7
8	아동용품	15	0.6
9	스포츠용품	14	0.6
10	컴퓨터기기	7	0.3
11	문구류	5	0.2
12	소프트웨어	0.5	0.0
13	농축산물	0.1	0.0
14	기타	39	1.5
합계		2,611	100

- (관세청) 면세점 온라인 해외판매를 제외한 '17년 전자상거래 수출 품목*은 의류(39.9%), 화장품(23.5%), 전기제품(11.8%), 광학기기(5.2%)순이며, 수출 품목은 갈수록 다양화 추세

* (의류) 티셔츠(46.6%), 양복(26.1%), 블라우스.셔츠(6.4%), 가디건(5.0%)
 (화장품) 기초화장품.메이크업제품(89.5%), 두발용품(7.8%), 바디미스트(1.6%)
 (전기제품) 모니터(20.1%), 음향기기부분품(19.6%), 모바일기기(14.7%), 비디오카메라(10.5%)
 (광학기기) 안경(46.6%), 광학렌즈(19.3%), 광학기기부품(9.4%), 안경테(5.1%)

- 최근 3년 건수기준으로 수출이 급증한 품목*은 귀금속(191.2%↑), 가죽제품(134.8%↑), 완구류 및 운동기구(112.3%↑) 순

* (귀금속) 주얼리(96.2%), 귀금속장식품(3.8%), 백금(0.02%), 은(0.01%)
 (가죽제품) 가죽가방(95.9%), 벨트.피혁류(2.0%), 합성가죽(1.9%)
 (완구.운동기구) 자전거.승용완구(95.5%), 스키용품(3.8%), 당구용품(0.41%)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방향

1] (창업판매) 전자상거래 수출 정보 및 교육 제공

- ① 수출전략 수립 지원을 위한 전자상거래 수출 정보 제공
- ② 중소수출기업(개인) 대상 전자상거래 수출 전문교육 과정 협업
- ③ 국가별 전자상거래 수입 동향 및 수입규제 정보 제공

2] (수출통관) 전자상거래 수출 통관절차 혁신

- ① 전자상거래 수출 전용 통관 시스템 구축
- ② 판매·배송 내역 기반 자동 수출신고 체계 구현
- ③ 전자상거래 수출 신고 방법 및 항목 간소화
- ④ 품목분류(HS) DB 및 HS Code 자동생성 체계 구축
- ⑤ 수출통관 인증제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 확충
- ⑥ 전자상거래 수출 관리 및 통계 정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3] (보관·배송) 보관·배송 등 물류비용 절감

- ① 전자상거래 수출 통관물류센터 구축
- ② 배송물품의 합배송 및 일괄배송 제도 신설
- ③ 우정본부 등과 협업을 통한 배송비용 절감 지원
- ④ 배송정보 기반 자동 수출이행 등록 체계 구축
- ⑤ 일본·대만·홍콩 등으로 해상특송 제도 확대 추진

4] (환급·반품) 세금 환급 및 반품 절차 간소화

- ① 국세청과 전산연계를 통한 세무신고(환급) 자동화
- ② 전자상거래 수출 물품 제조자의 관세환급 기반 확대
- ③ 반품 재수입 통관절차 간소화

전자상거래 수출 세부 지원대책

① (창업판매) 전자상거래 수출 유망정보 및 전문교육 제공

(1)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전자상거래 수출정보 정기 제공

- (개요) 전자상거래 수출과 관련하여 유망 품목·국가 선정, 수출전략 수립 등을 지원하기 위해 최신 동향정보 제공
- (현황) 통계청, 무역협회에서 총괄적인 수출통계(추정치)는 제공하고 있으나 수출업체에 실제 도움이 되는 세부 통계는 부재
- (개선) 세관 신고자료를 기초로 국가·품목(HSK 10단위)별 수출 증감율, 수출 급증감 국가·품목 등을 분석하여 분기별로 제공
 - ① 관세청 홈페이지 무역통계 사이트에 ‘전자상거래 수출입 통계’를 추가*하여 분기별 전자상거래 수출 통계 제공
 - * 무역통계 사이트 개편 : ① 일반 수출입, ② 남북교역, ③ 전자상거래 수출입(추가)
 - ② 전자상거래 수출 동향을 분석*하여 분기별로 e-Book 및 보도자료 형식으로 언론, 유관기관, 관련협회, 수출업체 등에 제공
 - * 한국무역통계진흥원과 협업 사업으로 추진
 - ③ 정확한 통계 집계 및 분석을 위하여 현행 목록제출시 기재항목 및 세관 미신고 수출물품(우편배송)에 대한 개선방안 시행

< 전자상거래 수출 관리 정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

신고형태	일반신고	간이신고	목록신고	미신고(우편배송*)
통계집계	포함	포함	불포함	불포함
개선방안	통합 및 항목 축소		항목 추가**	우체국 기표지 정보 연계

* 우편배송건 일부는 목록을 세관에 신고하나 상당수는 세관신고 없이 배송

** 품목분류번호, 사업자등록번호를 필수 기재사항으로 규정

(2) 창업·중소기업 대상 전자상거래 수출 전문 교육과정 제공

□ (개 요) 창업 및 수출 초기단계의 개인·영세기업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을 제공하여 전자상거래 수출 전문인력 양성

□ (현 황) 전자상거래 수출은 품목선정, 쇼핑몰 입점, 판매, 통관, 배송 등 규모는 작지만 일반 무역과 동일한 전문지식 필요

○ 대형 쇼핑몰은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입점 교육*을, 일부 정부기관, 민간협회 등은 관련 분야에 대한 비정기 교육 실시

* (예) ① e-bay : 입점 희망기업 대상으로 약 2~3일간 교육과정 운영

② 무역협회 : ‘해외전자상거래 멘토링 지원 서비스’를 통해 신규업체에게 창업부터 판매, 결제에 대한 교육 과정 운영

□ (개 선) 개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동향, 통관·물류, 결제·환급·반품 등 전자상거래 수출 교육 프로그램 마련

① 중기부, 우정사업본부, 국세청, 특송·물류업체, 쇼핑몰 등과 민관 협업을 통해 반기 1회 권역별로 전자상거래 수출 전문교육 실시

○ (정부부처 협업) 세관* 혹은 지방중기청별로 중기부, 우정본부, 국세청 등 정부기관, 쇼핑몰, 물류업체 전문가와 합동 교육

* (예) 본부세관별로 기재부, 한국은행 등과 합동으로 외환거래절차 교육

○ (협회·쇼핑몰 교육) 전자상거래수출협회, 대형 쇼핑몰 등과 협업을 통해 자체 교육 프로그램에 통관·물류 전문가 파견

② 전자상거래 수출 초보자를 위한 통관·물류 업무 매뉴얼을 제작하여 관세청, 유관기관, 관련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

* 유관기관 등과 합동으로 동영상, e-book 형태로 제작·배포

③ 수출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질문 및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1문 1답 형식의 자료집을 제작하여 홈페이지, 보도자료 등을 통해 배포

(3) 국가별 전자상거래 수입 동향 및 수입규제 정보 제공

- (개 요) 화장품, 식의약품 등 주요 전자상거래 수출 품목의 수입 규제 정보를 제공하여 수출전략 수립 지원 및 통관불허·반품 예방

- 전자상거래 수입(해외직구) 물품은 금액에 따른 세금 면세, 수입 요건 적용 여부 등에서 일반 수입물품과 차이

구 분	세금부과	수입요건 적용(각종 인증·승인)
일반수입 물품	관세 및 내국세 부과	수입요건 적용
해외직구 물품	일정금액 이하 관세·부가세 면제	일정금액 이하 수입요건 생략

- (현 황) 일반 수입물품*과는 규제가 상이한 전자상거래수입 물품의 경우 국가별 통관절차나 품목별 규제정보 제공창구 부재

* 일반 수출물품의 경우 중기부(기업마당), 무역협회(TradeNavi), 코트라(해외시장뉴스) 등에서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국가별 수입규제 정보 제공

- (개 선) 유관기관간 협력을 통해 국가별 전자상거래 수입 규제 정보를 취합·정리하여 제공

- 관세청, 코트라, 외교부 등으로 이루어진 「전자상거래 수출 해외 정보 분과」를 구성하여 수입 동향 및 규제정보 수집*

* 중기부 주관 「온라인수출 민관협의체」에 해외정보 분과 신설 건의

- 관세관* 등 기관별 외교부 주재관과 코트라 등을 적극 활용하여 국가별 수입 규제정보 상시 입수체계 구축

* 8개국(미국, EU, 중국, 홍콩,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12명

- 국가별 전자상거래 수입 동향 및 수입규제 정보를 주기적으로 갱신하여 기관별 홈페이지에 게시 및 수출 업체·개인에게 제공

- 전자상거래 수입통관 애로 해소 및 수입규제 정보 입수를 관세관의 주요 임무에 추가하고 대사관, 코트라와 협력을 통한 신속해결 체계 구축

② (수출통관) 전자상거래 수출 통관절차 혁신

(1) 전자상거래 수출 전용 통관 시스템 구축

- (개 요)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수출환경 조성을 위해 전자상거래 수출의 특수성*을 감안한 전용 통관시스템 구축

* 개인·영세기업의 높은 비중, 소액다건, 주문취소 빈번, 쇼핑물·배송업체 등과 연계

- (현 황) 기존 수출통관 시스템에 간이신고 기능(플랫폼)을 추가하여 운영('15)하고 있으나 여전히 업체는 불편 호소*

* 신고·정정·취하 절차 복잡, 민관 전산연계 부재로 적재이행, 통계관리 등에 어려움

- (신고) 수출신고 항목을 일일이 입력해야 하고 입력화면 구성도 매우 복잡
- (정정) 일일이 증빙자료 작성후 정정신청해야 하고, 상당수 세관방문 필요
- (취하) 신고취하 사유 증빙자료를 별도 작성하고 세관을 방문하여 제출
- (배송) 운송사 배송의뢰 및 세무신고시 모든 신고필증을 건별로 출력·제출

- (개 선) 사용자의 편의성 및 활용관리 용이성을 극대화한 독립된 「전자상거래 수출 전용 통관 시스템」 구축

- (신고화면) 네이버 등 검색포털의 회원가입 화면과 유사하게 구성하여 접근 편의성을 높이고 각 항목마다 도움말 기능 제공
- (수출신고) 전산연계를 통해 판매 내역을 수출신고 내역으로 자동 변환하고 HS Code 등 최소 항목만 입력하여 제출하도록 설계
- (정정취하) 신고자가 세관방문 없이 직접 시스템에서 모든 절차를 진행하고, 서류도 모두 표준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편
- (배송의뢰) 수출신고 내역을 표준 DB로 추출하고 운송사와 전산 연계하여 수출물품을 전산으로 배송 의뢰할 수 있도록 개선
- (수출이행) 특송업체·우체국과 전산연계를 통해 발송정보로 수출 적재이행 등록(출항적하목록 제출)을 갈음할 수 있도록 개선

(2) 판매·배송내역 기반 자동 수출신고 체계 구축

□ (개 요) 간편한 수출신고서 작성·제출을 위해 전자상거래 수출 통관 시스템에 판매·배송 내역이 수출신고로 자동 변환되는 기능 구현

□ (현 황) 소량·다품목의 전자상거래 수출 특성상 다수의 판매건에 대해 건별로 수출신고서 작성·제출 및 이에따른 부담인력 소요

* 1일 수백건~수천건씩 수출신고서 작성·제출에 대부분의 인력과 시간 소모

○ 일정규모 이상의 업체*는 관세사를 이용(70%)하는 경우가 많으나, 영세업체·개인은 직접 수출신고 비율(30%)이 높음

* 대형 온라인쇼핑몰 및 온라인수출액이 많은 중소기업·개인

○ 영세업체·개인은 수출신고 없이 특송업체(우체국)를 통해 통관목록만 제출*하거나 우편배송은 목록조차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① 판매액이 큰 쇼핑몰 등의 경우 세무신고 및 수출실적 인정 목적으로 수출신고

② 특송업체(우체국)에서 통관목록을 제출시 수출신고 생략(관세법 제254조의2)

** 우체국에 통관·배송을 일괄의뢰하지 않고 개별 배송하는 경우

□ (개 선) 판매내역 정보를 추출하여 자동으로 수출신고서를 생성하고 최소 항목*만 추가 입력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편

* 자동 변환된 수출신고서에 HS Code(품목분류번호) 항목만 추가 입력

○ HS Code의 경우에도 자동 추출 및 선택 기능을 도입하여, 반복적으로 동일 물품 수출시에 수출신고서에 자동 입력되도록 설계

○ 우정본부와 협의*를 통해 우체국 시스템에 입력하는 배송신청 정보가 수출신고서 및 적재이행 등록으로 자동 변환되는 시스템도 구축

* 관세청 수출신고서(항목)와 우체국 배송신청서(항목)의 일치 및 전산연계 추진

☞ 현재 상당수 수출신고(목록제출 포함)를 하지 않는 우편배송에 대해 배송 신청 정보와 수출신고를 자동 연계할 경우 수출 미신고 원천 차단 가능

※ 단계적으로 특송물품에 대해서도 자동 수출신고 기능 도입

(3) 전자상거래 수출 신고 방법 및 서식 간소화

① 전자상거래 수출 업체 등록요건 완화

- (개 요) 전자상거래 수출을 위한 세관 사전등록 절차와 관련하여 통관고유부호 발급 및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등록절차 간소화
- (현 황) 전자상거래 수출을 위해서는 국내 결제중개 서비스* 가입후 지자체에 통신판매업을 등록**하고 세관에 전자상거래수출업체 등록
 - * 에스프로 : 구매자가 주문후 대금을 은행 등 제3자에게 맡기고 배송 완료시 제3자가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불하는 결제중개 시스템
 -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구매안전확인서(에스프로) 제출 의무화
- 해외 쇼핑몰 입점업체는 국내 결제중개 서비스(에스프로) 가입이 차단되어 통신판매업 등록 및 간이수출신고 이용 불가
- 전자상거래 수출업체는 통신판매업 등록증을 증빙하여 세관에 등록해야만 간이 수출신고(전자상거래 : 거래코드 15)를 이용 가능
- (개 선) 공정위 협의를 통해 통신판매업 등록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일반 사업자등록증만으로 세관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
 - 해외 쇼핑몰 입점업체*의 경우 거래 혹은 입점사실 증빙시 통신 판매업 등록을 허용하도록 공정위에 규정 개정 건의
 - * 주문결제가 쇼핑몰이 위치한 외국에서 이루어져 국내 에스프로 가입 불필요
 - 간이*수출신고 이용을 위해 세관에 전자상거래 수출업체로 등록시 일반 사업자등록번호만으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허용
 - * 간이 수출신고(온라인수출업체만 가능) : 27개 항목, 일반 수출신고 : 57개 항목
 - 통관고유부호도 별도 신청절차 없이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등록시 자동 발급되도록 개선

② 전자상거래 수출 신고 일원화 및 신고항목 간소화

- (개 요) 전자상거래 수출의 특성을 감안하여 일반·간이 수출신고* 등 신고방법을 통합(전자상거래 수출신고)하고 신고항목을 간소화

* 금액기준,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등록여부에 따라 ① 일반수출신고(FOB 200만원 초과 or 미등록업체), ② 간이수출신고(200만원 이하 & 등록업체) 대상으로 구분

- (현 황) 물품금액,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등록여부에 따라 일반·간이 수출신고 대상으로 구분되고 입력항목도 많아 신고 애로 발생

구 분	대상기준*	신고항목	신고·제출인	비 고
일반신고	물품 FOB 200만원 이상 혹은 전자상거래 수출업체로 미등록한 경우	57개	화주, 관세사	수출신고 (신고수리 필요)
간이신고	물품 FOB 200만원 이하로 세관에 전자상거래 수출업체로 등록한 경우	27개	화주, 관세사	
통관목록 제출	물품 FOB 200만원 이하로 특송업체·우체국에서 통관대행시	17개	특송업체, 우체국	수출신고 아님* (제출로 종결)

* 통관목록 제출시 수출신고를 생략(관세법시행령 제246조, 제261조)하고 있으며 운송업체가 제출하고 수리행위가 없어 수출신고로 볼 수 없음(허위신고죄 적용 불가)

- (개 선) 일반·간이 수출신고를 통합하고 목록제출*과 형평성을 감안하여 수출신고 항목을 통관목록 항목과 동일하게 재설계

- 일반·간이 수출신고를 「전자상거래 수출신고」로 통합하고 신고항목을 현행 57개(일반)·27개(간이)에서 18개*로 대폭 축소

* 신고자, 신고번호, 세관/과, 수출화주(수출대행자, 제조자), 목적국, 결제방법, 거래품명, 모델·규격, 품목번호, 수량, 중량, 단가, 금액, 총수량, 총중량, 결제금액, 신고가격, 신고일자

- 물품금액과 관계없이 간이한 ‘전자상거래수출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세관에 등록(전자상거래 수출업체)된 업체로 이용을 제한

- 적절한 통관·통계관리를 위해 현행 17개 항목을 기재하는 통관 목록에 HS Code를 필수 기재사항으로 하여 18개 항목으로 개편

※ 다만, HS Code 자동 생성 기능을 구현하여 신고부담 최소화

<참 고> 전자상거래 전용 수출신고서 항목 개편(안)

□ 수출신고 항목 : 57개(일반), 27개(간이) → 18개(전자상거래 수출신고로 통합)

연번	일반수출신고 항목(57개)	간이수출신고 항목(27개)	전자상거래수출 통합신고 항목(18개)	비 고
1	신고자	○	①신고자	
2	수출대행자	○	②수출대행자	
3	제조사	×		필요시 기재
4	구매자	×		필요시 기재
5	신고번호	○	③신고번호	
6	세관·과	○	④세관·과	
7	신고일자	○	⑤신고일자	
8	신고구분	○		
9	C/S 구분	×		
10	거래구분	○		
11	종류	×		
12	결제방법	○	⑥결제방법	
13	목적국	○	⑦목적국	
14	적재항	×		
15	선박회사(또는 항공사)	×		
16	선기명	×		
17	출항예정일자	×		
18	적재(예정)보세구역	×		
19	운송형태	×		
20	검사희망일	×		
21	물품소재지	×		
22	L/C번호	×		
23	물품상태	×		
24	사전임시개정통보여부	×		
25	반송사유	×		
26	환급신청인	○		
27	품명	×		
28	거래품명	○	⑧거래품명	
29	상표명	○		
30	모델·규격	○	⑨모델·규격	
31	성분	×		
32	수량	○	⑩수량	
33	단가	○	⑪단가	
34	금액	○	⑫금액	
35	세번부호	○	⑬세번부호	
36	순중량	○	⑭순중량	
37	수량	○	⑮수량	
38	신고가격	○	⑯신고가격	
39	송품장 부호	×		
40	수입신고번호	×		
41	원산지	×		
42	포장개수	×		
43	수출요건확인	×		
44	총중량	○	⑰총중량	
45	총포장개수	○		
46	총신고가격	○	⑱총신고가격	
47	운임	×		
48	보험료	×		
49	결제금액	×		
50	수입화물관리번호	×		
51	운송(신고)인	×		
52	세관기재란	○	세관기재란	세관에서 기재
53	컨테이너번호	×		
54	기간	×		
55	적재의무기간	○	적재의무 기간	배송정보로 같음
56	담당자	○	담당자	세관담당자 자동배부
57	신고수리일자	○	신고수리일자	전산시스템에서 자동생성

(4) 수출신고 편의를 위한 HS Code 자동생성 체계 구축

- (개요) 수출신고시 애로*를 겪고 있는 품목분류(HS)를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HS Code 자동생성 시스템」 구축

*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간담회,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민원질의에서 개인사업자 및 영세기업을 중심으로 품목분류(HS) 방법에 대한 어려움 호소

- (현행) 품목분류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어 관세사를 통해 수출신고하거나 특송업체·우체국에 통관·배송을 일괄의뢰(통관목록 제출)

- 물품의 품명정보와 품목분류를 연계하여 HS Code를 알려주는 품목분류번호 결정 및 입력 지원 시스템이 부재

- (개선) 전자상거래수출 업체·개인이 시스템에서 직접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HS Code 표준 DB 및 자동생성 체계」 구축

- 전자상거래수출 물품의 품명을 입력하면 관련 HS Code가 표출되고 사용자가 선택하면 자동 입력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현

< 전자상거래 수출 품목분류(HS) 표준 DB 구축 >

- ◇ (개요) 그간의 통관자료를 분석하여 전자상거래수출 물품별로 사용비율에 따른 HS Code 및 핵심 분류기준을 담은 HS DB를 구성하여 제공

* (예) 티셔츠 → 6109.10-1000(사용비율:60%), 6109.90-1010(21%), 6109.90-9010(10%) 등

- ◇ (방안) 전자상거래수출 전용 통관시스템에서 품명을 입력하면 관련 HS DB가 표출되고, 적합한 HS Code를 선택하면 자동 입력되도록 구현

* 전자상거래 수출 통관시스템 검색창에서 품명, 규격 등 최소 사항 입력시 HS Code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체계도 병행하여 구축

- 전자상거래 수출 통관 시스템을 통해 HS Code e-book*을 제작·제공하고, 품목분류 문의 코너를 마련하여 신속 답변

* 품목분류 난이도 및 오류율, 수출빈도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품목 확대

(5) 수출통관 인증제 이용 활성화를 위한 통관조회 시스템 구축

- (개 요) 우리나라에서 정식 수출통관된 물품임을 나타내는 통관 인증제* 이용 활성화를 위해 통관사실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외국에서 유통되는 짝통과의 차별화 및 수출물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도입('16)

- (현 황) 전자상거래 수출업체는 배송업체에 작업을 의뢰하여 물품 운송장에 통관정보를 담은 QR코드를 인쇄하여 배송

- 해외구매자가 통관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통관인증제의 실효성 저하 및 위조 가능성 상존*

* 해외 온라인 쇼핑물을 통해 국내제품 구매시 위조상품을 배송받을 우려

- 제도적 미비점과 전자상거래 수출업체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일부 수출업체*에서만 제한적으로 활용

* 중국으로 화장품을 전자상거래 수출하는 업체 7~8곳에서만 이용

- (개 선) 해외구매자가 QR코드상의 통관정보를 모바일기기로 확인하고 관세청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는 시스템 구축

- 배송물품의 운송장에 인쇄하는 QR코드에 핵심 통관정보와 조회번호*, 관세청 조회 사이트 주소 등을 포함

* 조회번호 : 수출신고번호 끝(7자리) + 인증번호(수출신고수리일자 6자리)

- 관세청 홈페이지에 QR코드상의 조회번호를 이용하여 통관사실 여부 및 통관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수출통관 인증제는 위조상품 수출 등 불법행위 경력이 없는 성실 업체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정기적으로 사후관리 실시

- 간담회, 언론홍보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전자상거래 수출업체가 수출통관 인증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 강화

(6) 수출관리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전자상거래 수출 양성화 유도

- (개 요) 전자상거래 수출에 대한 관리 허점*으로 인한 통관 및 통계 부실화를 차단하기 위해 최소한의 제도 개선 추진

* 일반 수출에 비해 통관 심사·검사 측면에서 매우 간소한 통관절차 적용

- (현 황) 수출 저가신고, 세관 미신고(우편배송) 등에 대한 관리감독 장치가 부재하여 통관관리 및 수출자료의 부정확성* 유발

* 통계청 통계와 관세청 통계 간에 2배 이상 격차 발생

- 수출신고 자료를 기초로 기표지 등이 작성됨에 따라 외국에서 면세통관을 위해 저가 수출신고하는 행위가 만연
- 우체국에 전자상거래 수출 통관·배송을 의뢰(통관목록 제출)하지 않고 세관신고 없이 개별적으로 우편배송하는 경우도 빈번
- 통관목록 제출시 HS Code 및 사업자번호 부재, 복잡한 세관신고 (일반·간이·목록)로 인한 통관관리 및 수출업체 어려움 발생

- (개 선) 국세청(세무신고), 무역금융기관(수출실적 인정), 우체국 등과 전산 연계를 통해 저가신고·미신고 행위의 자발적인 차단을 유도

- 국세청, 금융권 등과 전산연계를 통해 수출신고 자료를 기초로 부가세환급, 무역금융 등의 업무처리가 이루어지도록 제도화*

* 세관 허위신고 및 미신고의 경우 세무신고 및 무역금융 신청에 어려움 가중

- 우체국과 전산연계를 통해 판매자가 입력하는 배송의뢰 정보가 자동으로 수출신고서로 변환*되어 세관에 전송되도록 시스템화

* (1단계) 우체국 → (2단계) 특송업체로 확대 추진

- 통관목록에 HS Code, 사업자등록번호(판매자)를 추가하고, 일반·간이 수출신고를 전자상거래 수출신고로 통합하고 신고항목 축소

③ (보관·배송) 물품의 보관·배송 비용 절감 지원

(1) 전자상거래 수출 물품 통관물류센터 구축

- (개요) 수출 물품의 보관·통관·배송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수출 통관물류센터*」 구축

* 전자상거래 수입물품(해외직구) : 인천공항에 특송물류센터 구축('16)

- (현황) 영세업체·개인을 중심으로 전자상거래 수출에서 보관·통관·배송 등 통관물류 업무의 비중이 가장 크고 애로사항도 집중

- 중기부 등 정부에서도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민간 물류업체와 영세 전자상거래 수출업체를 연계·지원하는 시범사업 추진('18.10)

< 중기부 전자상거래 수출 물류지원 시범사업 >

- ◇ (개요) 몇 개의 물류업체를 선정하고 비용을 지원하여 국내 전자상거래 수출업체의 물량을 보관, 패키징, 통관 등의 서비스를 일괄 수행하는 시범사업 계획

* 물류비용을 수출업체에 직접 지원하는 것은 WTO 협정 위배

- ◇ (일정) '18.10월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및 물류업체 선정 → 시범사업('18.10~'19.1)

- ◇ (혜택) 물류업체의 보관·운송료의 50% 지원, 통관비용 등은 100% 지원

- (개선) 중기부 협업 및 연구용역('19.상)을 거쳐 인천공항에 「전자상거래 수출 통관물류센터」를 구축하여 보관·통관·배송 원스톱 서비스 제공

- (1단계) 인천공항 세관 지정장치장*에 전자상거래수출 물품 보관 및 통관절차를 완료한 후 주문 즉시 배송하는 시범사업 실시

*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 인근 세관 지정장치장의 유휴공간 이용

- (2단계) 「전자상거래수출 통관물류센터」를 구축하여 세관, 중소 물류업체가 상주*하여 물품의 보관·재포장·통관·배송 일괄 처리

* 특송물류센터(전자상거래 수입)에도 세관 및 중소 특송업체들이 상주하여 업무 수행

(2) 수출물품의 합배송 및 일괄배송 통관 지원

- (개 요) 동일 온라인쇼핑몰에서 주문한 다수 판매자의 물품을 1개의 포장으로 통관 및 발송할 수 있도록 통관물류 제도 개선
- (현 황) 수출신고는 B/L 단위로 신고하여야 하므로 여러 판매자의 물품을 1개 포장으로 발송하는 경우 수출신고 등 통관에 어려움
- (개 선) 다수의 신고 대상건을 하나의 B/L로 합하거나 일괄하여 수출신고 및 수출이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 및 시스템 개선
 - 1개 B/L로 통관발송되는 경우 수출이행(적재) 등록 시 1개 적하목록(배송정보)을 다수 수출자도 기재가 가능하도록 개선
 - * 현재 House B/L 1건과 수출신고서 1건과 매치되도록 제도 및 시스템 운영

(3) 우정사업본부와 협업을 통한 배송비용 절감

- (개 요) 우편발송시스템과 연계하여 전자상거래 수출신고를 한 물품은 배송비용을 낮춰주는 방안을 우정사업본부와 협의·추진
- (현 황)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 업체는 따로 수출신고를 진행해야 하고 신고를 함에 따른 배송비용 할인 등 혜택 부족
 - * 우체국 상품중 전자상거래 판매물품에 대한 할인상품(K-packet, EMS특별감액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수출통관과 관련된 요금할인제도는 현재 없음
- (개 선) 업체가 우체국 발송시스템*을 통하여 우편발송을 의뢰하는 경우 발송내역을 토대로 수출신고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체계 구축
 - * 우체국과 계약체결 후, 우체국 계약고객시스템을 통하여 우편발송내역 입력
 - 우정본부와 협의하여 해당 시스템을 통해 우편발송을 이용하는 경우, 발송량에 따라 요금할인을 해줄 수 있도록 방안 협의

(5) 일본·대만·홍콩 등으로 해상특송 제도 확대

- (개 요) 배송비용 절감을 위해 세관당국간의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해상특송 제도를 아시아권 근거리 수출국가로 확대

* (해상특송) 국가간의 합의에 따라 특송업체가 페리선박을 이용해 운송한 물품에 대해서도 항공특송과 동일하게 간이한 세관 특송절차를 적용하는 제도

- (현 황) 한-중* 양국간에만 해상특송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요가 많은 일본, 대만 등 다른 근거리 국가와는 해상특송 제도 미시행

* 한국(인천) ↔ 중국(위해, 청도, 연태) : ('17) 20만건, 4백만불 상당 물품 수출

** 아시아권 주요 수출국가('17) :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항공·해상을 통한 배송비용 및 배송기간 비교>

구분	EMS(항공)	K-Packet(항공)	해상특송
발송가능 국가	약 100개국	약 200개국	중국
요금(중국/2kg)	32,500원	19,390원	10,500원
표준 배송기간	3~5일	7~10일	6~7일

- 일본 등의 경우 선박 운송물품에 대해서는 목록통관(특송절차)을 인정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인천공항*을 통한 항공특송을 이용

* 김해공항은 특송업체가 없어 부산지역 수출업체도 인천공항 항공특송 이용

- (개 선) 근거리에 위치한 전자상거래 수출 주요 국가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세관 협력*을 통해 해상특송 국가를 확대

* 양국간 과장급 실무협약('18) → 관세청장 회의 공식의제('19) → 협약 체결('19)

- (1단계) 일본, 대만, 홍콩을 우선으로 특정 개항(예 : 부산 ↔ 후쿠오카) 간에 해상배송이 이루어지도록 세관당국간 협의 추진

* 일본과는 여객선을, 여객선이 운항되지 않는 대만·홍콩과는 화물선을 이용

- (2단계)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운송비용 경쟁력이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추진

4 (반품·환급) 세금 환급 및 반품 절차 간소화

(1) 국세청과 전산연계로 세무신고·환급 증빙서류 간소화

□ (개 요) 수출실적 증빙자료인 세관 수출신고필증 자료를 국세청과 전산 연계하여 부가세 환급 등 세무신고 부담을 완화

□ (현 황) 수출업체는 부가세 영세율 환급을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이용해 수출 증빙서류*를 제출

* 증빙자료 : 수출신고필증, 국제운송장, 매출증빙자료 등

○ 세무서별로 요구하는 수출실적 증빙자료에 차이*가 있으나, 수출 규모가 큰 업체의 경우 수출신고필증 자료를 반드시 요구

* 일부 세무서에서는 물품 운송장 등으로 부가세 환급 등 세무신고 가능

□ (개 선) 전자상거래수출 세관 신고내역을 국세청과 연계하여 증빙 서류 첨부 없이도 수출내역 조회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

○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수출신고내역을 국세청과 전산 연계 하여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세무신고가 가능하도록 제도화

○ 국세청과 협의를 통해 세관의 수출신고 자료로 세무신고 증빙을 일원화하고 운송장 등 민간서류를 통한 증빙 허용범위를 제한

○ 수출신고 없이 특송업체·우체국이 제출하는 통관목록의 경우에도 수출실적 증빙이 가능하도록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의무화*

* 현재 수출신고 및 통관목록 제출도 하지 않는 미신고 우편배송물품의 경우에도 우체국과 배송의뢰 정보 전산연계를 통해 수출신고 및 수출실적 집계 시스템화

○ 수출신고를 하는 경우 세무신고(환급)가 편리하다는 것을 적극 홍보 하여 개인 및 영세업체의 미신고 수출행위 근절을 유도

(2) 전자상거래 수출 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기반 확대

- (개요) 전자상거래 수출 물품의 제조자가 관세 환급*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물품을 제조한 중소기업을 지원

구 분	신청자	환급기준
개별 환급	수출자·제조자	대기업 및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물품
간이정액 환급	제조자	환급신청일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이 6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이 제조한 물품

- (현황) 일반 수출물품에 비하여 금액이 적고 수출자와 제조자가 상이한 전자상거래 수출의 특성상 관세환급 신청이 거의 없음

- 영세한 전자상거래 수출업체는 수출물품을 제조자가 아닌 유통업자(중간 도매업자 등)로부터 구매하는 경우가 많음
- 신고서(간이신고)에 제조자를 기재하지 않고 수출자가 제조자에게 수출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간이정액환급 신청 곤란

* 물품 제조자에게 수출금액 FOB 10,000원당 정해진 금액(약 34원)을 환급

☞ 제조자가 수출업체에게 물품을 공급하였지만 제조자가 해당 물품의 수출사실을 파악하기 어려워 간이정액환급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

- (개선) 전자상거래 수출물품의 제조업체들이 쉽고 편하게 간이정액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및 환급시스템 개선을 추진

- 관세환급 자체에 대한 지식이 없는 업체가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보도자료, 관계기관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홍보

* “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 캠페인 등을 병행하여 추진

- 서류가 필요한 기존 절차*에서 제조자 사업자번호만 입력하면 해당 제조자가 기입된 수출신고내역을 토대로 환급을 실시하는 체계 마련

* 수출물품 용도설명서, 송품장, 수출계약서 등이 필요

(3) 전자상거래 수출물품의 반품 통관절차 간소화

□ (개 요) 반품 발생으로 물품을 국내로 재반입시 재수입 감면 및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여 반품처리 부담 완화

□ (현 황) 수출된 물품이 2년 내에 재수입되는 경우 수입통관 절차를 거치고 일정요건* 충족시 재수입감면 적용

* 수출신고필증, 상업서류 등을 통해 수출된 물품임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

○ 수입신고서, 감면신청서와 함께 수출신고필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통관심사 및 물품검사 등 통관절차를 거침

○ 반품물품의 경우 150\$ 미만 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사전등록*한 업체에 한해 별도 서류제출 없이 재수입감면 적용

* '재수입면세 신청 업체'로 세관에 등록

□ (개 선) 금액 및 사전등록 등 간이한 재수입 감면 적용 요건을 완화 하고 반품에 대해 수입통관 절차를 간소화

○ 150\$ 미만 금액조건 및 수입자 사전등록 요건을 폐지하여 모든 반품물품에 대해 간이한 재수입 면세 절차 적용

○ 수출업체가 재수입 감면 신청시 신청서에 수출신고번호만 기재 하면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없이 재수입 감면

○ 반품 물품에 대해서는 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상업서류 징구 없이 수입신고서 화면심사(P/L)로 업무처리

* 다만,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랜덤검사 실시 → 불법 적발시 P/L 배제

○ 수출건수에 비해 반복적인 반품건수가 많이 발생하는 수출업체에 대해 사후 기업심사 등을 통해 위법·부당한 행위 적발·처벌